

2018.09.27

## 한-미 FTA 개정안 협정 서명

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



- 한미 양국은 3차에 걸친 협상\*을 통해 2018년 3월 24일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으며, 9월 24일 한-미 FTA 개정협상안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.

\*1차('18.1.5), 2차('18.1.31-2.1), 3차('18.3.15~3.16)

- 한미가 서명한 금번 개정협상안은 ISDS 제도(투자자 국가분쟁 해결) 악용 방지,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한미 양국은 2019년 1월 1일 개정 FTA 발효를 목표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의정서에 대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

2018.09.27

**개정협상 주요 결과**

**ISDS 개선**

- 투자자-국가 분쟁해결제도 관련 남소 제한
-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및 절차개선 근거규정 마련

**무역규제 투명성/절차 개선**

- 현지실사 절차규정, 덤핑&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등

**섬유 원산지기준 개정추진**

-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은,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특정 최종재 생산시 역내산으로 인정 추진

**자동차 관세**

-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 ('21.1.1 철폐)에서 추가 20년('41.1.1 철폐)으로 연장  
대상세번 : 8704.2100, 8704.2250, 8704.2300, 8704.3100, 8704.3200, 8704.9000

**자동차 안전기준**

- 연간 제작사별 50,000대(기존 25,000대)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(FMVSS) 준수 시,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(KMVSS) 충족한 것으로 간주
- 미국산 자동차 수리용 교체 부품에 대해 미국 안전기준 충족 시 한국 안전기준 충족한 것으로 간주

2018.09.27

## 개정협상 주요 결과

### 자동차 환경기준

- 연비/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 유지('16~'20)하고, 차기 기준 ('21~'25) 설정시, 미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

### 원산지검증

- 양국 공통 적용 원산지검증 원칙 재확인, 원산지검증 작업반 신규 설치

2018.09.27

### 향후 절차

- 서명 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한-미 FTA 개정협정 비준 동의를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-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상대국에 서면통보 후 60일 (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)에 개정 FTA는 발효됩니다.
- 양측은 2019년 1월 1일 개정 FTA 발효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.